

● 제30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286)

2021. 4. 2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86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외 18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4월 1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 2. 제안이유

-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하여 권리보장 및 지원면에서 미흡한바, 이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 마련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 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 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규정함 (안 제8조).

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센터의 설치를 규정함  
(안 제9조).

마. 시청각장애인 관련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0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음.
- 제정안은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의규정(안 제2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시장의 책무(안 제3조)로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시민의 책무(안 제4조)로 시청각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실태조사(안 제7조),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안 제8조),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등(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7조(실태조사)
제2조(정의)	제8조(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9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조(시민의 책무)	제10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2조(시행규칙)
	부 칙

##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총칙규정(안 제1조~안 제5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시민의 책무(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 “시청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상위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또한,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으로 정의<sup>1)</sup>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상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시각 및 청각기능이 동시에 손상되어 의사소통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복장애인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지원 대상의 범위를 심하지 않은 시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설정하게 되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심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1)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 대상 시청각장애인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을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중복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 조례<sup>2)</sup>의 경우,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시각과 청각 중복장애인 연령별 현황><sup>3)</sup>

(단위 : 명)

주장애 유형	부장애 유형	연령구간	심한 장애		심하지않은 장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 계			340	243	508	266
시각	청각	10세~19세	1	0	0	0
		20세~29세	1	3	0	0
		30세~39세	9	5	2	0
		40세~49세	9	4	0	0
		50세~59세	28	9	4	3
		60세~69세	18	29	10	7
		70세~79세	54	40	23	12
		80세~89세	57	59	17	22
		90세~99세	13	13	4	6
		100세이상	0	2	0	0
청각	시각	5세~9세	1	0	0	0
		10세~19세	2	1	0	0
		20세~29세	2	1	0	1
		30세~39세	5	0	1	0
		40세~49세	5	6	4	1
		50세~59세	15	6	14	3
		60세~69세	19	8	57	10
		70세~79세	44	24	160	60
		80세~89세	52	24	182	103
		90세~99세	5	9	30	36
		100세이상	0	0	0	2

2)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시청각중복장애인”이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3)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계 자료, 서울시 제공

- 추출방법 : '21년 3월 기준,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가 동시에 등록된 장애인(주장애, 부장애 구분)

##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6조~안 제7조)

-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기적인 현황파악 등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1조<sup>4)</sup> 및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타 실태조사와의 중복조사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조항으로 판단됨.

## 다.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안 제8조)

- 조례안 제8조는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 ▲자립생활 교육·훈련, 직업재활, ▲자조모임 운영·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양성 및 파견,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개발·보급,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및 홍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4)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등(안 제9조)

- 조례안 제9조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시청각장애인의 발굴·상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및 돌봄 제공,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수단의 개발·연구,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센터의 기능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것임.
- 또한,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35조5)에서도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및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학습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업 및 취업교육, 재활정보 제공, 정보화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9개소의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시각장애인센터 6개소, 청각장애인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센터는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각각의 학습지원에 특화되어 있어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음.
- 조례안에 명시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5) 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시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분	센터명	소재지	'21년 지원액 (천원)	종사자 수 (명)
시각장애인 센터	실로암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관악구	2,738,259	54
	하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강남구	654,666	12
	성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성북구	503,828	10
	노원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노원구	667,532	13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종로구	634,062	13
	한국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강동구	515,971	10
청각장애인 센터	서울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서대문구	693,213	14
	소리샘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동작구	298,339	5
	청음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강남구	298,339	5

**마.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됨.
- 또한, 시장의 조직편성권에 해당하는 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는 바, 위원회 설치·구성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바. 그 외 규정(안 제11조~안 제12조)**

- 조례안 제11조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

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는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

### 사. 집행부의견

- 집행부에서는 시각과 청각기능의 동시적 손상으로 인해 시청각 감각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간 상충 등 별도 쟁점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 종합의견

-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중복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복지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특정 중복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및 다른 중복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류민국 입법조사관 (02-2180-8140)